

# 중국의 재정과 조세제도(I)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I. 문제 인식

중국의 재정은 크게 보아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으로 구분되며, 양자의 위상과 역학관계는 시기적으로 달랐다. 1970년대 말에 단행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규모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1978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합친 국가재정의 세입은 1,132.26억 위안에서 31,649.29억 위안으로 무려 28배나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배분 상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였다. 개혁·개방 당시에는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이 비슷한 지출규모를 유지하였으나 개혁정책이 추진된 이후부터는 지방재정의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

가하면서 급기야 중앙재정의 규모를 크게 앞질렀다. 예컨대, 1978년의 경우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상호 대등한 수준(중앙재정 532.12억 위안, 지방재정 589.97억 위안)이던 것이 2005년에는 지방재정(25,154.31억 위안)이 중앙재정(8,775.97억 위안)을 2.9배 초과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지방재정은 고도경제성장에 힘 입어 1978~2005년 기간 중에 세출 규모가 40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1978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지방재정의 세출은 1978년의 589.97억 위안에서 25,154.31억 위안으로 42.6배 증가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지방재정이 급성장세를 보인 현상은 중국재정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적 현상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재정의 규모 증가에 비해 재정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총 재정수입의 대 GDP 비중은 1978년의 31.8%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25~30% 범위로 떨어졌고 그 후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는 10%대까지 크게 낮아졌다. 2005년 현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합친 국가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조사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현상을 인정한다면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공공부문(재정)의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조세제도가 과거와 달리 고도경제성장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현대화되고 있는 점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례로 최근에 와서 선진국에서 기간세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이들 조세수입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중앙재정이 지방재정을 통제 관할하는 국가주도형

1) 다만, 중국의 재정운영이 공식 예산 이외에 비공식적인 예산외자금(撥外資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제시된 수치에 대해 일정 수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예산외자금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정 연도의 경우 예산외자금이 예산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막대하였다. 따라서 예산과 예산외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의 재정규모는 공식통계보다 훨씬 커지며 그 결과 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히 크게 상향조정될 것이다.



재정운영시스템이 실시되었다. 당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재정제도의 기본 틀과 운영방식의 허용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된 정책, 계획, 제도의 기반 위에 수립되었고 지방정부의 예산운영권한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었다.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주요 세목의 입법권, 세율 조정권, 조세 감면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등 지방정부는 과세권<sup>taxing power</sup>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80년대, 90년대에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배경으로 지방의 예산편성 및 지출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종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방정부는 현재 과세권, 예산편성 및 운영권한에 기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규제와 감시, 감독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지방재정 자율성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중국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하는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자율성 관점에서 파악되는 중국의 재정분권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중국재정제도는 1994년에 단행된 재정개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세제<sup>分稅制</sup>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1994년도 재정개혁은 일부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재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세제도의 틀을 현대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개혁을 통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에 분명한 체계가 정립되고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책임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 중국정부는 1994년도 재정개혁 이후에도 개혁정책과 수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국정부가 대내외 변화요인 —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개방화, 세계무역기구(WTO) 참가, 사유재산권 인정, 부의 편중(소득 격차), 정보화 등 — 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조세제도를 점진적으로 선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이러한 제도변화의 결과 중국정부의 조세수입은 크게 늘어났고 재정의 위상과 역할도 자연히 크게 강화되었다. 선진국의 조세제도와 비교하면 중국의 조세제도가 여전히 낙후되었지만 13억 인구의 거대 경제낙후국가가 단기간에 큰 사회적 저항이나 난관 없이 그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달성한 것은 결코 과소평가 될 일이 아니다. 이제 중국은 GDP 규모면에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재정규모면에서도 세계 굴지의 국가 반열에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때, 중국의 재정과 재정의 핵심이 되는 조세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서 이 글은 중국의 재정기반이 되는 조세제도를 정리 소개하고



일단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문제인식에 이어 제2절에서는 중국의 재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3절은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전반에 관해 살펴보면서 지방세제도의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4절은 중국의 조세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과제를 도출하고 있고, 제5절은 이 글의 종합이다.

다만, 지면관계상 이 글은 두 차례에 나누어 연재되며, 첫 호에서는 1~3절의 내용 대부분을 다루되 중국의 주요 세목(중앙세, 지방세, 공동세원)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에서 다루기로 한다. 아울러 제4절과 제5절의 내용은 다음 호에 연재된다.

## II. 중국의 재정제도 - 개관

중국의 재정제도는 크게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으로 구분된다. 양자간의 배분 상태와 재정관계는 조세제도와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였다. 1978년 말에 단행된 개혁·개방 이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특히, 지방재정의 성장속도가 매우 빨랐다. 대체로 말해, 198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재정규모(세출기준)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그 후부터는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기야는 중앙재정의 규모를 압도하였다(이 기간 중에는 중앙재정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중국정부가 중앙재정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상대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제지할 수 없었다. 2005년 현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출규모는 각각 8,775.97억 위안, 25,154.31억 위안이고 양자간의 상대비중은 26% 대 74%이다.

### 1. 중앙정부재정

2005년 기준으로 중앙재정의 규모(세출기준)는 8,775.97억 위안이고 이것은 국가재정지출과 GDP의 각각 25.9%, 4.8%에 해당한다. 최근 10년(1995~2005)을 돌이켜 보면 중앙재정



은 세입기준으로 국가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의 50~5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1〉 참조). 일반적으로 중앙재정의 세입은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정수입, 채무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자체수입은 조세수입이 대종을 이루며(통상 조세수입이 중앙정부 세입의 80~90%를 차지함), 이것은 중앙정부의 독자적 세원인 국세수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향세(共享稅) 수입으로 구성된다. 조세수입은 과거 공상세(工商稅) 위주로 징수되던 것이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와 조세구조의 부분적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조세수입의 구성(세목별 중요도)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은 소비과세와 소득과세 수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뒤에서 다루어진다). 그밖에 국가에너지, 교통 분야의 국가중점건설기금수입과 기본건설대출상환금 등이 일부 세외수입 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중앙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이전재정수입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을 말하며 이것은 중국 특유의 재정이전방식이다. 중국의 재정이전제도는 크게 보아 (1)지방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의 재정이전제도와 (2)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제도(교부세, 보조금 등)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한 국세수입의 중앙 상납금을 비롯하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제공하는 재정이전이 포함된다<sup>2)</sup>. 후자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등현상을 교정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반보조금(體制補助金)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이해관계를 지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정보조금 그리고 가격차보조금(價格差補助金)<sup>3)</sup> 등 기타 보조금이 존재한다.

채무수입은 국채발행수입, 해외차관수입, 국내공채발행수입, 국고채권수입, 전업은행(全業銀行)의 재정채권매입분 등으로 구성되는 세입을 의미한다.

2) 역사적으로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각종 재정이전을 받아왔으며 그 중 상당금액이 재정력이 풍부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천진시(天津市) 등으로부터 제공되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중앙정부가 국세와 공동세(公향稅)를 직접 징수하면서 지방정부로부터의 이전재정수입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3) 가격차보조금(價格差補助金)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의 제철, 탄광, 화학비료 등 5개 공업 분야에 대한 보조, 농산물 수매가격과 판매가격간의 차액보조, 의료·보험·문화 등 정부의 요금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가격보조, 농업용생산제, 수송비 보조 등 다양한 보조금이 있다. 가격차보조금(價格差補助金)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크게 줄어들었고 그 유형도 의료보조금, 식사보조금, 일용품보조금, 교통보조금 등 다양해졌다(임성일, 1998 참조).

중앙재정의 주요 기능별 세출(2005)을 살펴보면, 가장 큰 지출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 건설비(9,316.96억 위안, 전체 세출의 27.5%)이고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교육비(8,953.36억 위안, 26.4%), 행정관리비(6,512.34억 위안, 19.2%) 등이다. 그밖에 중앙재정 지출 가운데 중요한 항목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재정이전과 국내외 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다. 지방재정이전지출은 크게 중앙정부가 징수한 공동세(共享稅) 수입의 일부를 일정한 배분원칙에 의해 지방으로 돌려주는 자금과 각종 교부금·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채무상환지출은 국가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지출로서 중앙재정의 적자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참고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상태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자본투자, 건설부문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기술진보, 농업, 교육·문화·보건, 사회복지, 공공안전, 공공기초시설, 일반행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세출 기능별 내역을 살펴볼 때, 중국의 중앙·지방간 기능분담은 국제적 관행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간에 기능 중복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전기, 통신, 교육, 과학, 건강, 중공업분야 등에서 두드러진다. 종합적으로, 국방, 기본건설, 거시경제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기능이 중앙과 지방간에 중복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2. 지방정부재정

2005년 현재 지방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25,154.31억 위안이고 이것은 각각 국가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 지출과 GDP의 74.1%, 13.7%에 해당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지방재정의 지출규모는 중앙재정의 지출규모를 통상 2배 이상 초과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2005년의 경우 무려 2.9배나 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약 30년간 중국의 경제와 재정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중앙·지방정부 간의 세출 배분비율은 1978년의 약 5 대 5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재정의 상대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약 7 대 3의 수준에서 지방재정의 압도적 우위현상이 고착



화되었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지방재정이 크게 신장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재정을 축소하고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재정분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지방으로부터 중앙정부로 제공되는 재정이전 규모가 현저히 감소한 현상과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현상 등도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입·세출 상대비중

(단위: %)

|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세입 | 중앙정부 | 24.5 | 38.4 | 33.8 | 52.5 | 52.2 | 52.4 | 55.0 | 54.6 | 54.9 | 52.3 |
|    | 지방정부 | 75.5 | 61.6 | 66.2 | 47.8 | 47.8 | 47.6 | 45.0 | 45.4 | 45.1 | 47.7 |
| 세출 | 중앙정부 | 54.3 | 39.4 | 32.6 | 29.2 | 34.7 | 30.5 | 30.7 | 30.1 | 27.7 | 25.9 |
|    | 지방정부 | 45.7 | 60.3 | 67.4 | 70.8 | 65.3 | 69.5 | 69.3 | 69.9 | 72.3 | 74.1 |

자료: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2006.

〈표 2〉 중국 재정수입의 대 GDP 비중

|             | 1985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GDP(10억 위안) | 901.6   | 1,866.7 | 6,079.3 | 9,921.4  | 10,965.5 | 12,033.2 | 13,582.2 | 15,987.8 | 18,308.4 |
| 세입(억 위안)    | 2,004.8 | 2,937.1 | 6,242.2 | 13,395.2 | 16,386.0 | 18,903.6 | 21,715.2 | 26,396.4 | 31,649.2 |
| 세입/GDP비율(%) | 22.2    | 15.7    | 10.3    | 13.5     | 14.9     | 15.7     | 16.0     | 16.5     | 17.3     |

자료: 중국통계출판사, 상계서.

지방재정의 세입은 크게 보아 조세수입(지방세수입, 공향세수입의 일부), 세외수입(각종 부담금, 사용료 수입 등), 이전재정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지방재정이 전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정수입에 의존하였으나 개혁·개방정책 이후부터는 이전재정수입 외에 지방세수입 등 다양한 지방의 자체수입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핵심 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방산세(房產稅)를 포함한 10개 세목과 중앙·지방정부가 세수를 공유하는 증치세(增值稅) 등 7개 공유세목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조달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1)일반보조금(體制補助金), (2)특정보조금, (3)기타 재정이전제도(세출결산보조금, 조세반환 등)가 있다. 체제보조금(體制補助金)은 정액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의 성격을 지니며, 중

양정부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성(省)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제도와 반대로 재정력이 풍부한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제도의 두 유형이 있다. 특정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사업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지방에 지원하는 조건부보조금(conditional grants)으로 통상 사용용도가 정해지고 지방비 부담이 수반된다. 그 밖에 세출결산보조금과 조세반환제도 등이 있는데 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부 예산외항목을 정산한 다음 해당 잔액을 상호 이전해 주는 제도이고, 후자는 중앙정부가 징수한 공동세수입(共享稅)의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국가와 달리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국가는 채무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채무재정 활동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다만, 매년 각 성별로 중앙정부가 소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할당해 주는 예외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방채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현재 정확한 지방채무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경제시보(2004. 4·5)에서는 전국의 현·향·촌의 60~80%가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3,259억 위안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지방재정의 기능별 지출구조는 지역별, 지방정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수도인 베이징(北京市)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기능별 지출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표 3〉 참조). 베이징시의 2005년도 기능별 세출 내역에 의하면 교육사업에 가장 많은 지출(1,458,723만 위안, 전체 지출의 13.8%)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기본건설지출(844,269만 위안, 8.0%), 치안사법관련경비(公檢法司支出)(843,905만 위안, 8.0%), 행정관리비(691,634만 위안, 6.5%), 위생(공중보건)경비(656,229만 위안, 6.2%), 도시유지보호건설(城市維護費)(527,159만 위안,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베이징(北京市) 등 주요 대도시의 세출내역(2005)

(단위: 만 위안)

|        | 베이징(北京)    | 천진(天津)    | 상하이(上海)    | 중경(重慶)    |
|--------|------------|-----------|------------|-----------|
| 합 계    | 10,583,114 | 4,421,207 | 16,462,250 | 4,873,543 |
| 기본건설   | 844,269    | 732,323   | 3,692,060  | 733,446   |
| 기업혁신지출 | 443,307    | 291,198   | 2,370,026  | 97,882    |
| 지질탐사비  | 12,900     | 14,637    | 1,646      | 7,192     |
| 과학기술비  | 96,094     | 108,550   | 29,114     | 48,959    |
| 유동자금   | -          | -         | -          | -         |



|                            |           |         |           |         |
|----------------------------|-----------|---------|-----------|---------|
| 농업지출비                      | 276,401   | 87,498  | 246,078   | 130,318 |
| 임업지출비                      | 86,443    | 12,578  | 16,569    | 149,771 |
| 농림·수리·기상부문사업비              | 63,576    | 28,427  | 88,560    | 30,816  |
| 공업·교통부문사업비                 | 73,253    | 19,120  | 73,701    | 30,032  |
| 유통부문사업비                    | 2,588     | 254     | 1,928     | 3,916   |
| 문화·체육·방송사업비                | 250,827   | 107,471 | 264,465   | 104,379 |
| 교육사업비                      | 1,458,723 | 672,034 | 1,829,415 | 606,598 |
| 과학사업비                      | 157,439   | 27,989  | 159,199   | 10,855  |
| 위생경비                       | 656,229   | 189,803 | 521,464   | 151,757 |
| 기타부문사업비                    | 409,578   | 107,850 | 633,179   | 112,232 |
| 사회복지비                      | 320,515   | 87,061  | 248,436   | 172,664 |
| 이·퇴직관련경비                   | 538,247   | 11,609  | 69,060    | 316,635 |
| 사회보장보조비                    | 250,954   | 372,050 | 720,825   | 431,288 |
| 국방지출                       | 3,041     | 2,631   | 4,996     | 5,316   |
| 행정관리비                      | 691,634   | 259,918 | 689,946   | 516,304 |
| 외교·외사경비                    | 1,597     | 6,260   | 10,410    | 616     |
| 무장경찰부대지출                   | 2,296     | 2,708   | -         | 14,548  |
| 치안사법관련지출                   | 843,905   | 318,590 | 880,928   | 332,896 |
| 성시유호비 <small>城市維護費</small> | 527,159   | 520,168 | 864,610   | 375,711 |
| 정책성보조금지출                   | 46,158    | 30,072  | 14,229    | 63,957  |
| 저개발지구지원지출                  | -         | 50      | -         | 45,145  |
| 해역개발건설관련지출                 | -         | 3,166   | -         | -       |
| 차량세금지출                     | 7,161     | 4,637   | 2,657     | 66,936  |
| 채무이자지출                     | -         | 2,000   | -         | 2,404   |
| 특별항목지출                     | 325,194   | 90,989  | 298,953   | 100,104 |
| 기타 지출                      | 2,193,626 | 309,566 | 2,730,096 | 210,866 |

### III. 중국의 조세제도

#### 1. 개관

앞 절에서는 중국의 중앙 및 지방재정의 규모와 변화추이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배경지식을 갖고서 중국재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전

체 구조와 틀, 기본특성, 수입내역 등에 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수입은 역사적으로 중국재정의 핵심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와 같은 역할은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몇 차례 재정개혁이 단행되면서 두드러졌고, 이 시기부터 조세수입은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전담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조세수입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을 분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고, 1985년 이후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4〉 중국의 조세수입이 재정수입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년도   | 조세수입(억 위안) | 재정수입 대비 조세수입비중(%) | GDP 대비 조세수입비중(%) |
|------|------------|-------------------|------------------|
| 1950 | 49.0       | 75.2              | 8.5              |
| 1955 | 127.5      | 46.9              | 14.0             |
| 1960 | 203.7      | 35.6              | 14.0             |
| 1965 | 204.3      | 43.2              | 11.9             |
| 1970 | 281.2      | 42.4              | 12.5             |
| 1975 | 402.8      | 49.4              | 13.4             |
| 1978 | 519.3      | 45.9              | 14.3             |
| 1980 | 571.7      | 49.3              | 12.7             |
| 1985 | 2040.8     | 101.8             | 22.8             |
| 1990 | 2821.9     | 96.1              | 15.2             |
| 1995 | 6038.0     | 96.7              | 9.9              |
| 2000 | 12581.5    | 93.9              | 12.7             |
| 2001 | 15301.4    | 93.4              | 14.0             |
| 2002 | 17636.5    | 93.2              | 14.7             |
| 2003 | 20017.3    | 92.2              | 14.7             |
| 2004 | 24165.7    | 91.5              | 15.1             |
| 2005 | 28775.1    | 91.0              | 15.8             |

자료: 중국세무출판사, 중국세제, 2006.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는 1994년에 도입된 분세제(分稅制) 체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분세제의 도입은 중국 재정개혁의 핵심이었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을 비롯하여 재정구조, 세입·세출내역, 국가와 국유기업(國有企業)간의 이윤분배체제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분세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개혁의 목표를 압축하면, (1)중앙재정의 적정수준 확보<sup>4)</sup>, (2)비왜곡적이고 투명한 조세제도의 확립, (3)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의 재조



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한마디로, 분세제는 중국이 천명한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 노선을 재정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적 개혁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省級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엄격히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유세원인 공향세(共享稅)의 세목과 배분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정부간 세수배분제도의 정착과 재정운영의 책임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 과정에서는 국세·지방세의 조정, 신세목의 도입, 기존 세목의 통폐합 축소조정, 공향세(共享稅) 배분방식의 재조정, 세무기구 개편을 통한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간접세·소득세 기능강화 등 중국의 조세체계 전반에 걸치는 구조변화가 수반되었다. 분세제의 도입 결과 중국의 조세제도(중앙·지방간의 세원배분)는 중앙세, 지방세, 공동세의 3원 체제로 정립되었다(임성일, 1998).

종합적으로, 1994년도 세제개혁은 중국의 국가재정은 물론 중앙·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동 세제개혁은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에 있어서 세원공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조세제도의 효율성, 징세행정의 개선, 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분세제 개혁은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 외에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이나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발전해 온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2. 중국 조세제도의 구조 및 조세수입 내역

### 1) 조세제도 구조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는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되는 중앙세(國家固定稅)와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되는 지방세(地方固定稅) 그리고 두 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共享稅)의

4) 중국 정부가 1994년도 재정개혁을 추진한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체계를 재정립하는데 있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있었다. 그 결과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배분이 과거에 비해 중앙정부에게 유리하도록 조정되었다. 그것은 지방분권화가 전개되면서 중앙·지방간의 재정위상은 과거의 중앙재정 위주로부터 지방재정이 급성장 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적자, 거시경제 관리상의 취약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부족, 지역간 재정·경제격차의 심화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노정 되었다(임성일, 1998).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앙세에는 관세를 포함하여 소비세(세관에서 징수하는 소비세, 증치세 增値稅 포함), 차량구치세 車輛購置稅, 선박톤세가 있다. 지방세에는 방산세 房產稅를 비롯하여 성시방지산세 城市房地產稅, 성진토지사용세 城鎮土地使用稅, 경지점용세 耕地占用稅, 계세 契稅, 토지증치세 土地增値稅, 차선사용세 車船使用稅, 차선사용패조세 車船使用牌照稅,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 연석세 筵席稅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향세에는 증치세 增値稅, 영업세 營業稅, 기업소득세 企業所得稅,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 개인소득세 個人所得稅, 자원세 資源稅, 인화세 印花稅, 성시유호건설세 城市維護建設稅가 있다.

[그림 1] 중국의 조세체계



자료: 중국세무출판사, 전계서, p. 190.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향세 세목의 정부간 배분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향세의 기간 세목인 증치세는 1994년도 세계개혁 이후 중국조세의 핵심 세목으로 부상한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각각 75%, 25%의 비율로 배분된다. 영업세의 경우 철도, 은행, 보험회사와 관련된 영업세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우선 철도운수, 국가우정, 국유은행, 주요 국가공기업(석유, 천연가스, 화학분야)으로부터 징수되는 세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업소득



세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60% 대 40%의 비율로 할당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60%와 40%의 비율로 배분받는다.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의 경우 해양석유와 천연가스공사 분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60%와 40%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 자원세의 경우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기타 세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인화세의 경우 주식거래관련 세수입의 97%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3% 세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성시유효 건설세의 경우 철도, 은행본점, 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징수되는 세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중국의 조세제도를 과세유형별(재화 및 용역과세, 소득과세, 재산과세, 기타과세) 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표 5〉 중국의 조세제도(조세 유형별)

| 조세 유형     | 세 목                            |
|-----------|--------------------------------|
| 재화 및 용역과세 | 증치세(增值稅(부가가치세))                |
|           | 소비세(消費稅)                       |
|           | 차량구치세(車輛購置稅)                   |
|           | 관세(關稅)                         |
|           | 영업세(營業稅)                       |
| 소득과세      |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                   |
|           |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 |
|           |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
|           |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
| 재산과세      | 방산세(房產稅)                       |
|           | 성시방지산세(城市房地產稅)                 |
|           | 성진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
|           |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
|           | 계세(契稅)                         |
|           | 자원세(資源稅)                       |
|           | 차선사용세(車船使用稅)                   |
|           | 차선사용패조세(車船使用牌照稅)               |
|           | 선박톤세(船舶噸稅)                     |
| 기타 과세     | 인화세(印花稅(인지세))                  |
|           | 성시유효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
|           |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       |
|           | 연석세(筵席稅)                       |
|           | 농업세(農業稅)                       |

자료: 중국세무출판사, 전게서, p, 186.

먼저, 재화 및 용역과세에는 증치세, 소비세, 차량구치세, 관세, 영업세가 포함되고 소득과세에는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가 포함된다. 재산과세에는 방산세, 성시방지산세, 성진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계세, 자원세, 차선사용세, 차선사용패조세, 선박톤세가, 그리고 기타과세에는 인화세, 성시유호건설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연석세, 농업세가 포함된다.

## 2) 조세수입 내역

중국의 조세수입 내역(2004)을 세목별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중국의 조세수입 내역(2004년 기준)

| 세 목                                      | 조세수입(억 위안) | 총 조세수입 대비 비중(%) |
|--|------------|-----------------|
| 1. 증치세(增值稅)                              | 8404.5     | 35.8            |
| 2. 소비세(消費稅)                              | 1539.6     | 6.6             |
| 3. 차량구치세(車輛購置稅)                          | 534.7      | 2.3             |
| 4. 관세(關稅)                                | 1043.8     | 4.4             |
| 5. 영업세(營業稅)                              | 3583.6     | 15.3            |
| 6.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                          | 3142.5     | 13.4            |
| 7.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br>(外商投資企業 和外國企業所得稅) | 932.5      | 4.0             |
| 8.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 1736.2     | 7.4             |
| 9.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 75.0       | 0.3             |
| 10. 방산세(房產稅)                             | 306.7      | 1.4             |
| 11. 성시방지산세(城市房地產稅)                       | 59.6       | 0.3             |
| 12. 성진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 106.2      | 0.5             |
| 13.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 118.5      | 0.5             |
| 14. 계세(契稅)                               | 538.9      | 2.3             |
| 15. 자원세(資源稅)                             | 98.8       | 0.4             |
| 16. 차선사용세(車船使用稅)                         | 35.1       | 0.1             |
| 17. 차선사용패조세(車船使用牌照稅)                     | 0.7        | --              |
| 18. 선박톤세(船舶噸稅)                           | 11.5       | --              |
| 19. 인화세(印花稅)                             | 290.3      | 1.2             |
| 20. 성시유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 674.1      | 2.9             |
| 21.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             | 3.4        | --              |
| 22. 도재세(屠宰稅)                             | --         | --              |



|            |         |       |
|------------|---------|-------|
| 23. 연석세筵席稅 | --      | --    |
| 24. 농업세農業稅 | 238.6   | 1.0   |
| 25. 목업세牧業稅 | 0.8     | --    |
| 합계合計       | 24165.7 | 100.0 |

자료: 중국세무출판사, 전개서, p. 196.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5% 이상을 차지하는 기간 세목을 열거하면, 증치세 8,404.5억 위안(전체 조세수입의 35.8%), 영업세 3,583.6억 위안(15.3%), 기업소득세 3,142.5억 위안(13.4%), 개인소득세 1,736.2억 위안(7.4%), 소비세 1,539.6억 위안(6.6%) 순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공유하는 공향세 세목(8개)을 제외한 순수 중앙세(4개 세목) 수입만을 고려할 경우 이들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 불과하다. 중앙세(공향세 제외) 가운데는 소비세(1,539.6억 위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관세(1,043.8억 위안), 차량구치세(534.7억 위안) 등의 순으로 세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세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파악하면, 계세수입이 538.9억 위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방산세(306.7억 위안), 경지점용세(118.5억 위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공향세수입을 제외한 순수 지방세(8개 세목)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때,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세원공유방식은 사실상 세계에서 유래를 발견하기 힘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수입의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시를 포함한 4대 대도시(天津, 上海, 重慶)의 지방세수입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았다. 베이징시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공향세수입을 함께 고려할 때, 영업세수입(3,837, 623만 위안)이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업소득세(1,647,615만 위안), 증치세(975,976만 위안), 개인소득세(845,232만 위안), 계세(606,775만 위안), 성시유호건설세(388,336만 위안), 방산세(352,058만 위안)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하이시 등 기타 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베이징北京市 등의 세입내역(2005)

(단위: 만 위안)

|                | 베이징北京     | 천진天津      | 상하이上海      | 중경重慶      |
|----------------|-----------|-----------|------------|-----------|
| 합 계            | 9,192,098 | 3,318,507 | 14,173,976 | 2,568,072 |
| 증치세增值稅         | 975,976   | 642,377   | 2,261,236  | 336,548   |
| 영업세            | 3,837,623 | 964,545   | 5,129,265  | 702,018   |
| 기업소득세          | 1,647,615 | 414,157   | 2,491,494  | 139,817   |
| 기업소득세 환급       | -         | -3,026    | -          | -         |
| 개인소득세          | 845,232   | 188,224   | 1,119,241  | 106,662   |
| 자원세            | 2,855     | 4,679     | -          | 29,945    |
|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 6         | 51        | 1,927      | -         |
| 성시유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 388,336   | 158,763   | 497,914    | 131,586   |
| 방산세房產稅         | 352,058   | 103,040   | 341,042    | 57,507    |
| 인화세印花稅         | 108,870   | 38,301    | 260,311    | 24,646    |
| 성진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  | 32,986    | 10,124    | 20,865     | 20,740    |
| 토지증치세          | 23,831    | 3,555     | 246,277    | 29,273    |
| 차선사용패조세車船使用牌照稅 | 31,744    | 8,791     | 14,160     | 3,913     |
| 도재세屠宰稅         | -         | -         | -          | -         |
| 연석세筵席稅         | -         | -         | -          | -         |
| 농업세            | -         | -         | -          | 791       |
| 농업특산세          | -         | -         | -          | 13,697    |
| 목업세牧業稅         | -         | -         | -          | -         |
| 경지점용세          | 7,405     | 8,255     | 33,916     | 31,325    |
| 계세             | 606,775   | 163,175   | 1,110,419  | 141,390   |
| 국유자산경영수익       | 15,442    | 82        | 7          | 96,751    |
| 국유기업계획손해보조     | -502,900  | -25,000   | -179,869   | -22,477   |
| 행정관련 사용료       | 245,235   | 458,474   | 340,636    | 480,942   |
| 벌금 및 몰수수입      | 188,420   | 67,835    | 162,068    | 90,923    |
| 해역장, 광구 등 사용료  | 11,090    | 3,026     | -          | 3         |
| 특별사업수입轉項收入     | 329,862   | 89,995    | 290,350    | 123,271   |
| 기타수입           | 43,637    | 19,084    | 32,717     | 28,801    |

자료: 중국세무출판사, 중국세제, 2006.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조세제도가 지니는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체적으로 조세의 종목이 많으며, 세목의 수면에서 파악할 때 지방세 종목이 중앙세보다 더 많다.
- (2) 조세수입 면에서 파악하면 중앙세수입이 지방세수입보다 많다. 하지만 중앙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을 합친 금액은 공동세수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共享稅)의 세목과 유형이 많고 그 배분 방식 또한 다양하다. 공동세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약 70-80% 내외인데,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때 중국의 조세제도는 한마디로 공동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4) 1994년의 분세제 개혁 이후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가 기간 세목으로 정립된 점과 2000년대에 들어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과세가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점은 중국의 조세제도가 현대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 (5) 베이징(北京)시를 포함한 대도시(천진(天津), 상하이(上海), 중경(重慶))에 있어서 중요한 조세수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영업세,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소득세, 성시유호건설세(이상 공동세), 계세, 방산세(이상 지방세) 등이다.

### 3. 조세행정

중국의 조세기관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초기인 1981년 말에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설치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조직개편과 1992년의 세수징관법(稅收徵管法)이 공포되면서 현재의 조세행정체계가 갖추어졌다. 동법에 의해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세무국(國家稅務局)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그 이름도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으로 개칭했다. 1993년에는 그 동안 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오던 국가세무총국을 재정부와 같은 등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다(한상국 참조).

[그림 2] 중국의 조세행정기구 및 조직



자료: 중국세무출판사, 전계서, p. 200.

분세제의 도입을 계기로 조세징수 행정체계는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행정체제로 전환되었다(종전에는 거의 모든 세금을 지방정부의 세무기관인 지방세무국에서 일괄 징수한 다음 국세징수분과 공유세수입 중 중앙정부 귀속분을 중앙정부에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조세행정이 운영되었다). 현재는 국가징수기관인 국가세무총국이 국세와 공항세를 부과 징수하며 지방세무국 내에 중앙세무국<sup>5)</sup>과 지방세무국이 공존하는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sup>5)</sup>. 국세국은 국세와 공항세를 징수하면서 공항세 수입 중 법정 지방분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세무국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sub>縣</sub>, 시<sub>市</sub>, 구<sub>區</sub>, 기<sub>旗</sub> 이상의 지방정부에는 세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있으며, 그 이하의 지방정부에는 세무분국<sub>稅務分局</sub>, 세무서<sub>稅務所</sub>가 있다(그림 2 참조). 최하위 세무기관인 세무소는 현급 세무국<sub>縣級 稅務局</sub> 및 성<sub>省</sub>, 직할시<sub>直轄市</sub>, 각구<sub>各區</sub>, 분국<sub>分局</sub>에서 파견한 기구이며 경제구별로 나누어서 설치된다. 해양세무석유관리국<sub>海洋稅務石油管理局</sub>은 국가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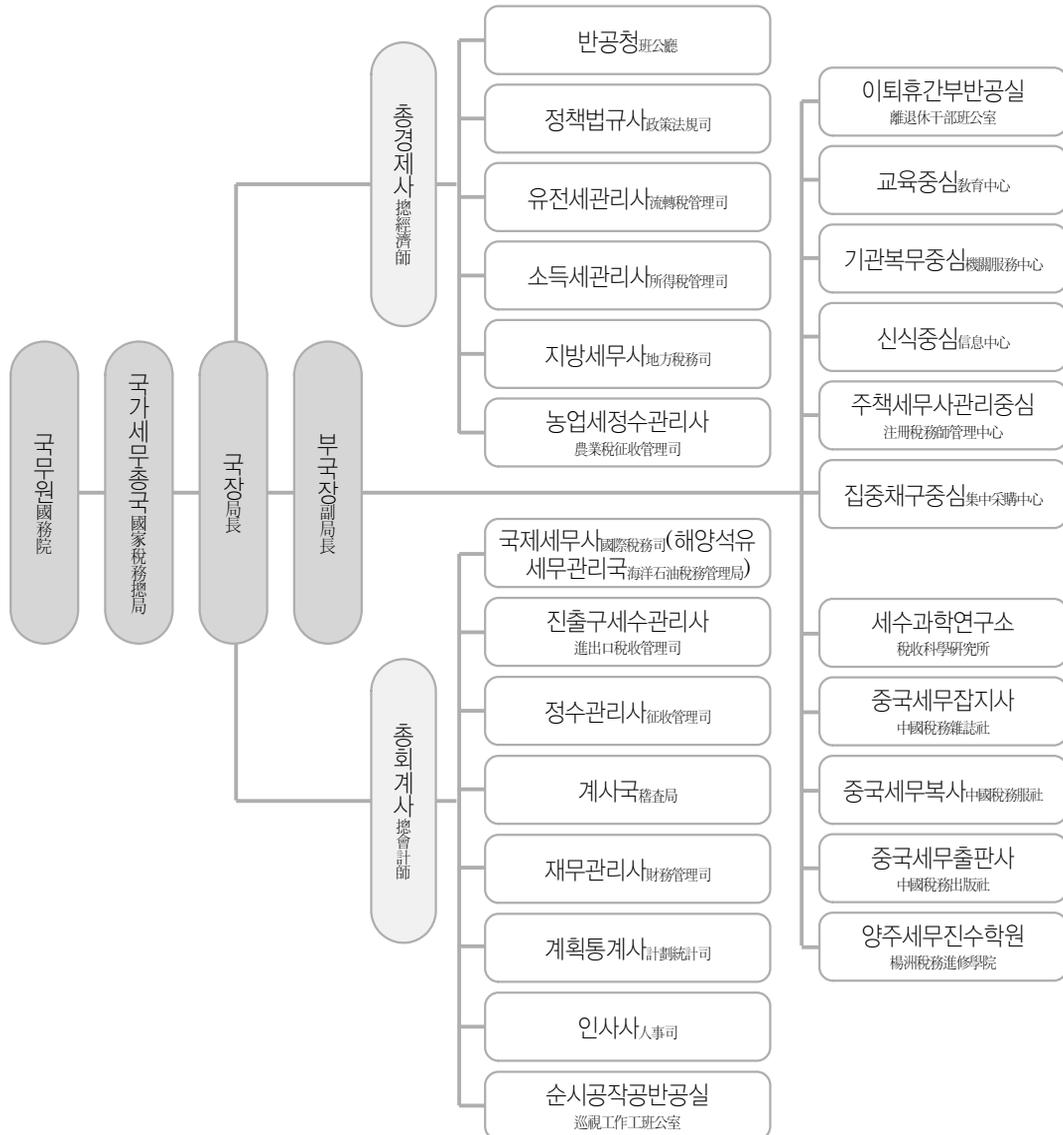
5) 중국의 세무행정기관은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된 직후인 1981년 말에 대부분의 성<sub>省</sub>, 시<sub>市</sub>, 자치구<sub>自治區</sub>에 설치되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세무행정기구와 조직의 변천을 겪었고 세수징관법<sub>收徵管法</sub>(1992)이 공포되면서 현재의 세무행정 체계가 자리를 잡았다.



중국의 직속사업단위(直屬事業單位)에 속한다. 관세와 선박톤세는 해관총서(海關總署)에서 담당하며 국무원 직속기관이다(한상국).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 [그림 3]에 정리되어 있다. (다음 호에서 계속)

[그림 3] 중국의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조직



자료: 중국세무출판사, 전세서, p. 202.

● 참고문헌 ●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국의 지방재정제도, 1998.

한상국(한국조세연구원),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1995.

君毅(編), 大陸新稅制, 台北, 1994.

企業管理出版社, 「國稅業務手冊」, 「地方稅業務手冊」, 1995.

劉佐, 中國稅制概覽, 經濟科學出版社, 2006.

中國稅務出版社, 中國稅制, 2006.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鑒, 2006.



■ 부록 ■

〈 분세제(分稅制) 개혁 직후의 중앙·지방재정간 세원배분 〉

|                  | 中 央 政 府   | 地 方 政 府  |
|------------------|---|--|
| 固<br>定<br>收<br>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關稅</li> <li>◇ 稅關代理徵收消費稅· 增值稅</li> <li>◇ 消費稅</li> <li>◇ 中央所屬企業所得稅</li> <li>◇ 銀行外 金融機關의 所得稅</li> <li>◇ 鐵道部門· 各銀行本店· 各保險會社<br/>本社의 一括納付金(營業稅, 所得稅,<br/>利潤, 都市維持建設稅 포함)</li> <li>◇ 中央所屬企業上納利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營業稅 (각 銀行本店, 各 保險會社本社, 鐵道部門의 一括上納分<br/>은 제외)</li> <li>◇ 地方所屬企業所得稅 (銀行, 金融機關所得稅 제외)</li> <li>◇ 地方所屬企業上納利潤</li> <li>◇ 個人所得稅</li> <li>◇ 都市土地使用稅</li> <li>◇ 固定資產投資調節稅</li> <li>◇ 都市維持建設稅 (각 銀行本店, 各 保險會社, 鐵道部門의 一括上<br/>納分 제외)</li> <li>◇ 不動產稅</li> <li>◇ 船舶車兩使用稅</li> <li>◇ 印花稅</li> <li>◇ 屠宰稅</li> <li>◇ 農牧業稅</li> <li>◇ 耕地佔有稅</li> <li>◇ 契稅</li> <li>◇ 遺產稅</li> <li>◇ 土地增值稅</li> <li>◇ 國有地有償讓渡稅</li> </ul> |
| 共<br>通<br>收<br>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增值稅의 75%</li> <li>◇ 海洋· 石油資源稅</li> <li>◇ 證券交易稅의 5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增值稅의 25%</li> <li>◇ 기타 資源稅</li> <li>◇ 證券交易稅의 50%</li> </ul>   |
| 支<br>出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央統一管理基本建設投資</li> <li>◇ 中央直屬企業의 技術更新改造費</li> <li>◇ 地質探查費</li> <li>◇ 中央財政農業支援支出</li> <li>◇ 國防費</li> <li>◇ 武裝警察經費</li> <li>◇ 外交· 對外支援支出</li> <li>◇ 中央機構行政管理費</li> <li>◇ 中央財政負擔內外責務返經費</li> <li>◇ 中央負擔公安· 司法· 檢察支出</li> <li>◇ 中央文化· 教育· 科學· 厚生支出</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調達基本建設投資</li> <li>◇ 地方企業技術更新改造費</li> <li>◇ 農業支援支出</li> <li>◇ 都市維持建設費</li> <li>◇ 地方文化· 教育· 科學· 厚生支出</li> <li>◇ 地方機構行政管理費</li> <li>◇ 地方負擔公安· 司法· 檢察支出</li> <li>◇ 一部の 武裝警察經費</li> <li>◇ 民兵事業費</li> <li>◇ 價格補助金支出</li> <li>◇ 기타 支出</li> </ul>   |

자료: 企業管理出版社, 「國稅業務手冊」, 「地方稅業務手冊」, 1995.(임성일에서 재인용)